

/N G7ž# \$ê G3ŽA>%Æ, G4úB> GG~339@ G/Ö,p%.': R GG~Ö,p9æ-Ž9Z9&Hâ O9ĒG@a G w h j P G<
8 9',Æ S G%:9ç R G o9- G%K/ 9š G:r52G¶ C

IÄ*Ç R G9ZHq GGR9Z G'G GG~ !FC*{8& G%VG² G9@-Ž:f8& G%VG² G%K/ R G9æ#--+Ö G& 8-;|
7ž#

G~Ö,p9æ-Ž9Z9&Hâ8&3r GG~ !FC*{ G R:^9š G9ZG@8B GG~ !+Ö G& 9 G4n C

9Ē G V9Ē'2\$ê G(fG² G K, G~ ! G524úC² R G V*~&n8 G9P\$ê G †C G%>? !:*23r GG~ !FC*{8& G%VG² G
9š G9ĒĒG@a 69æ GG@ \$ê G%>? !:8& â& G& 9 9Ē G&v G Ü9Ü% %: U G, < , 9'*2 GG~ !FC*{8& G%VG²
6@> G.e G !9w S G8^• S G;g: G.e G/JHŽ GGZ*² N)p8& G%VG² G:k/J

/N G V9Ē'28&3r G3 8ÿ&n\$ê G I9æ#- I8- G IG~33 I9Ē)Ö G# ,&9- G X `3Ž G.N,"9@ G,p
IG~Ö,p I9@ G:k9@ \$ê G i j GG~ !.ë*•8&3r G3 8ÿ&r G Ü R G&/9

3 † G.ë*• S G:r G X Z9ú8&\$ê G,Ü52&n8 G9P\$ê GG~Ö

^ P GG~339Ē"î G9æ#-9@ C

%o P GG~339Ē"î G9æ#-9@ G.ë:W G/JHŽ â9č

Š P GF 3 52 GG~339Ē"î G9æ#--+Ö G&"/J 6 G f& |

i j GG~Ö,p9æ-Ž9Z9&Hâ8F,O G O i j j w h j P8&3r\$ê G9Ē G7ž# -Ž9š G:r9çG@ \$ê%Æ GGš8êG² G 0š+C
9w/Ö9@ G& 9 8& G5B5BG² G f3 +Ö G'2, \$ê G.

목차

학교폭력의 정의	1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란?	2
학부모의 대응책	3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3
대처방안 결정	3
학교로 도움 청하기	4
올바른 대응절차	5
학교 외부의 도움 청하기	5
자녀가 피해자인 경우	6
자녀가 방관자인 경우	7
자녀가 가해자인 경우	7
귀하의 항소권리	9
자가보조 안내	10
학부모자문위원회(PAC)의 역할	12
귀하의 학교는 얼마나 안전한가?	13
학부모가 인지하고 있어야 될 사항: 권리 및 책임	15
추천도서 목록	18
기타 참고자료	18

희롱과 위협행위의 학교폭력이란?

게일과 그녀의 친구, 제인은 수업시간이 끝난 뒤 몇 분간 더 남아서 공부를 하다가 뒷정리를 하고 막 교실 문을 나서던 때였다. 문 밖에서 서성거리는 몇 명의 여학생들이 교실 문을 나서던 게일과 제인을 날카로운 눈으로 찌려보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 여학생들 앞을 지나던 순간 그들 중의 한 명이 "멍청이"라고 그녀들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 나머지 여학생들도 야유를 던지기 시작했다. 게일과 제인은 겁을 먹고 그 자리에서 허겁지겁 도망을 쳤다.

학생들에게는 안전하고 안정된 그리고 환영받는 학습환경에서 학업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교사들과 교무직원들도 희롱행위가 근절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교사들과 교무직원들의 권리는 교육위원회와 체결한 노조 협약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¹

희롱행위란 당사자에게 아픔을 주거나 위협적인 행위 및 언사 혹은 그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동이나 언사를 뜻한다. 위협적인 행위란 당사자에게 강제적으로 특정적인 행동을 하게 하거나 혹은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희롱행위와 위협적인 행위의 증후는 쉽게 발견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자녀가 귀하에게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불평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희롱행위와 위협적인 행위는 쉽게 학부모 입장에서 빨리 발견하지 못하거나 감추어 질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현상은 귀하의 자녀가 희롱행위나 위협적인 행위의 대상이거나 혹은 그런 행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 ✓ 자녀가 자신에 대한 대우가 공평치 못하다고 불평을 하는가?
- ✓ 자녀의 행동에 변화가 있음을 느끼는가? 잠을 자지 못한다던가 혹은 걱정이 많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가?
- ✓ 집밖에 나가거나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 ✓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는가?
- ✓ 학교에서 돌아오는 자녀의 옷차림에서 보지 못하던 옷이나 장식구를 달고 있음을 보았는가? 혹은 출처가 확실치 않는 현금을 수중에 가지고 있는가?
- ✓ 자녀가 다른 학생들에게 가해겠다고 말하는 그 행위의 정도가 학교에서 벌칙을 내릴만한 정도의 지나친 수준은 아닌가?
- ✓ 자녀의 학업성적이 갑자기 뚝 떨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희롱 및 위협적인 학교폭력 행위의 몇 가지 예

- ✓ 별명 부르기
- ✓ 원치 않는 놀림행위
- ✓ 폐쇄된 공간에 가두기
- ✓ 인종차별적이거나 배타적인 욕지거리
- ✓ 원치 않는데 몸을 만지는 행위
- ✓ 위협적인 쪽지나 편지 혹은 이메일
- ✓ 위협적인 언사, 행위 혹은 무기소지
- ✓ 약점을 잡아 비웃기
- ✓ 집단 따돌림
- ✓ 유언비어 퍼뜨리기
- ✓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낙서
- ✓ 스토킹
- ✓ 금품갈취행위

¹ 다수의 단체들이 자체내의 노조와의 협약에서 희롱행위에 대한 정의를 포함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BC교사노조와 교육부의 단체협약서 (PCA)에서 내리는 희롱행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성적희롱행위; 혹은
-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느낌을 주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던 행위. 그리고 가해자로서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거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야 할 행위; 혹은
- 상대방을 모욕감을 주거나 위협적인 행위로서 1회 혹은 상습적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 언사 혹은 물질 및 전시행위; 혹은
-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위를 상사입장에서 요구하는 행위, 가해자가 상식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온당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하는 행위; 혹은
- 위협적인 행위나 언사 혹은 구술된 및 블랙메일식으로 이용하는 집권남용행위.

올바른 해결을 보지 못한 희롱 및 위협적인 학교 내의 폭력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 학업성적 저하
- 학교 출석률 저하
-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인 감정의 훼손
- 피해학생의 방어적 폭력행위 초래

대개의 경우, 이러한 학교폭력행위의 피해는 피해자 학생과 가족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극단적 경우, 당사자 혹은 그 주위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행위에서 자살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 학교폭력을 근절시키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 학부모와 가족, 학교, 학군교육진, 지역사회 등이 학교폭력행위가 어떤 것임을 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고, 그 해결책을 서로 모두가 협력하여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 교사, 자원봉사자들은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 그리고 환영받는 분위기 속에서 배울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질 권리가 있다. 괴롭히고 위협적인 행위, 차별행위나 희롱행위는 결코 누구에게도 용납되어선 안 되는 행위이다. (참고: BC Safe Schools and Communities Centres, p. 18)

교육정책헌명에서는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공립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의 한가지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인격과 사회성 계발 – 학생들의 자아의식과 솔선수범 태도를 계발시킨다... 사회적인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아이디어를 존중할 줄 아는 태도를 배운다.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라도 있다. 폭력행위는 학교 내 혹은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

- 동료학생
- 교사
- 교무직원
- 교무 행정요원
- 기타 어른 (예: 버스 운전자, 자원봉사자, 학부모)
- 기타 청소년 (학교에 다니지 않는).

희롱행위는 배운 행위이며, 또 다시 하지 않도록 배울 수 있는 행위이다. 누가 가해학생들이며 왜 그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BC 교육부에서 발간한 다음 책자를 참고하기 바란다: Helping our kids live violence free: A parent's guide (8-12학생 대상)

http://www.bced.gov.bc.ca/live_vf/

필립은 지난 3개월 동안 현재의 소셜스터디 반에서 다른 반으로 옮기려고 무진한 애를 써오고 있다. 그는 자신의 교사가 자기를 대하는 행위가 정당치 못하고 심술궂은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교사가 내리는 학습평가 결과가 정당치 않다고 믿고 있으며, 교사가 자신을 빗대어 던지는 언사가 자기를 놀리기 위한 것이라 느끼고 있다. 반면에 같은 반의 몇몇 학생은 교사로부터 차별적인 귀여움을 받고 있다고 관찰하고 있다. 오늘의 경우, 필립이 하는 답변발표를 듣고 던지는 교사의 피드백은, "야, 네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뇌가 담겨있었다면 큰일날뻔 했었구나!"이었다.

학부모의 대응책

우리의 자녀들은 정서적이나 신체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중, 고등학생 나이의 자녀들이지만, 아이들은 아직도 부모의 관찰과 감독이 필요한 시기이다. 물론 자녀를 대표하는 역할도 우리 부모의 할 일이지만, 동시에 아이들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가이드 해주는 역할도 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구를 찾아가 지도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일이 진행될 것인지를 아이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부모와 가족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했을 때 그 사실을 신고해야함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학교폭력 신고 및 조사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대부분의 중, 고등학교 나이의 아이들은 가족이나 부모가 개입하는 것을 꺼려한다. 그 이유는:

- 부모가 개입됨으로서 문제가 더 복잡해 질 것 같다는 생각
- 부모가 개입하더라도 학교에서 자신의 문제가 무시당할 것이라는 생각
-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 자신의 문제가 그 다지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
-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부모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아이들은 부모에게 말문을 열 것이다. 자녀의 말을 경청하면서 대화를 유도한다.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관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보자:

- ✓ 아이들이 우리의 도움이나 보호가 필요한가?
- ✓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 어떠한 정보가 나에게 필요한가?
- ✓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가?

대처방안 결정

아이들의 안전과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했을 때, 부모의 개입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부모가 개입하여야 하는지도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아이들에게 상황설명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고자질"과 "신고"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고자질"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이 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흔히 사용하는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반면에 신고를 하는 행위는 용기가 필요한 행위이다. 신고를 하는 목적은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행위이다.

"한 아이의 교육과 지도를 책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근본원리는 그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부모에게 먼저 있다."

유엔 아동헌장, 제 7장, 1959

문제상황을 문서화하려면 페이지 10에 나와있는 자조안내를 참조한다.

방관하는 자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상황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학교로 도움 청하기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이거나 방관자 혹은 가해자일 경우, 문제해결에 대한 기본방식은 동일하다. 먼저, 학교의 담당 교직원에게 상황을 알린다. 대개의 경우 담당 교직원 이란 :

교사 - 문제가 발생한 장소가 교사가 감독하고 있는 장소일 경우. 예를 들면, 교실이나 체육관 탈의실 같은 경우.

교장 - 문제가 발생한 장소가 복도, 로커, 버스 정거장, 특별활동 시간, 등하교 시 등과 같이 항상 감독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을 찾는다.

그 위의 책임자를 찾아야 되는 경우 - 학교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학군의 교육감, 교육장 대리나 지역 교육위원회의 교육장을 찾도록 한다.

자녀와 부모가 할 일:

- ✓ 신고 받는 사람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신고사항을 조사할 것인지를 물어본다.
- ✓ 신고를 받는 사람에게 언제쯤 조사결과를 연락 받을 수 있으며,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 학교폭력 사고를 신고 받은 학교측에게 불평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는 동안 어떤 방식으로 가해 용의자를 감독할 것인지를 확인 받는다.
- ✓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효력 있는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 ✓ 자녀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구한다.
- ✓ 후일 보복행위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녀의 이름 및 기타 인적사항을 비밀로 해줄 것을 강조한다.
- ✓ 자녀가 정서적이나 심리적인 후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나 지역학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학교측과 상이해본다.
- ✓ 자녀의 안전을 위한 해결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해본다.

학교의 교장은 학교행정 및 재학생들의 품행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것을 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학교를 상대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런 경우, 담당인의 상관에게 직접 이야기를 꺼낸다.

상세한 기록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말자. 10장에 있는 절취용 페이지를 이용한다.

자녀를 위한 옹호 과정에서 부모는 담당책임자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옹호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은 옹호단체, Advocacy Project, 무료장거리 전화 1-888-351-9834로 문의한다.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청할만한 단체들이나 서비스가 있을 수 있다. 본 안내서에 나와있는 자료란을 참조한다.

BC 교사노조의 윤리강령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1. 교사는 학생들과 대화를 하거나 학생들 앞에서 행동을 취할 때, 그들에 대한 존엄성과 존중심을 갖고 행동한다. 학생 개개인의 권리와 감수성을 감안하여 사리분별이 있는 태도로 대한다."

이상은 전문인과 윤리적인 교사의 모델 강령이다.

성인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할 시에는 관련지역의 불평신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아동학대에 연관된 문제일 경우 주 아동 및 가정부에 신속히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 안내서 18장 참조)

"학교측에서 불량학생에 대한 신고를 경찰에 해야되는 기준은? ... 학교 행정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 유지할 책임을 맡고 있다. 그 책임의 한 부분으로 소속학생의 신변안전에 대한 의심이 우려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의 개입은 교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형법에 저촉되는 심각한 행위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임을 시사하는 역할도 한다."

안전학교생활지침서: 교장 및 교감을 위한 안내서, 144장

올바른 대응절차

자녀의 사태에 올바른 해결책을 찾는데 해당 교육학군의 활동과 결정을 좌우하는 학군 정책 및 절차를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된다.

각 학군마다 희롱과 위협의 학교폭력 행위를 규제하는 정책과 절차가 있다. 대개의 경우 이것은 복합문화 정책, 반차별, 반폭력 정책 및 또는 학생행동규범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다음과 같은 학교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본원리 역할을 하고 있다:

-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존중할 줄 아는 학교사회
- 희롱행위, 위협행위 및 차별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학교사회
-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사회

지역 교육청으로 안전학교생활 규범의 사본을 요청하여 자녀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이용하도록 한다.

학교 외부의 도움 청하기

학교 내에서 자녀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학교에 있다. 외부단체의 개입에 대한 결정은 학교측이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또한 학교측이나 학군이 평상시 외부기관들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그 기관들과의 기존 협안에도 관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BC지역 경찰기관들은 현지 학교와 청소년 서비스 단체들과 협력하여 청소년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처를 취해오고 있다.

만일 자녀의 신변안전에 대한 추호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바로 현지 경찰로 신고를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건의 배경과 자신이 취한 행동을 메모한 문서기록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된다.

자녀가 피해자인 경우

자녀의 자신감을 키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녀가 괴롭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어찌면 이미 아이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방법을 시도한 후 인지도 모른다. 가해자에게 맞서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할 수도 있다.

자녀에게 학교에 신고할 때 어떻게 상황을 설명할 것인지 대화를 유도해본다.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일 경우, 자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불평사항 신고 시 결정권과 자격을 갖춘 담당인에게 즉시 회부시켜 줄 것
- ✓ 자녀가 면담을 할 때, 자녀가 원하는 보조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 ✓ 조사과정이 비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요청
- ✓ 신고자에게 대한 보복행위가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것에 대한 확답과 만일 그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요청
- ✓ 자녀가 조사자와 면담을 했을 경우, 그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나 문서기록 사본 요구
- ✓ 학교측에서 추후 학원 내 폭력사태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설명요구
- ✓ 전학을 하게 될 경우, 피해자 학생이 학교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 학생이 전학을 하도록 요구
- ✓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이나 위협행위 때문에 자녀가 등교를 두려워할 경우, 2차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후일 재입학 계획을 요구
- ✓ 학교폭력 대상으로서의 얻은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카운슬링 요구
- ✓ 학교측에서 자녀를 학교외부기관(경찰이나 정신건강의료원)으로 의뢰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요구

일반적으로 가해학생이나 그 학생의 부모를 직접 만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폭력이 없는 사회 속의 어린이,
교육부, p. 16.

다음은 불평신고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의 사례이다. 교사의 근무환경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조항 E. 2, PCA: "고용인은 불평신고를 접수받았을 때 반드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를 하는 사람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거나 희롱불평신고를 처리한 전문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피해자는 같은 성별의 조사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실현이 가능할 때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구제 절차 d. 희롱행위의 결과로 직원이 전근을 하게 되는 경우, 전근을 하는 직원은 가해자이어야 한다. 단, 피해자가 전근을 요청했을 때에는 예외이다.

반폭력 청소년 전화는 청소년들이 정보전달, 범죄행위 방지 및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안전하고 비밀을 보장하는 전화서비스이다. 전화번호는 1-800-680-4264 (BC 주)이며, 웹사이트 www.takingastand.com 를 통하여 이메일 연락도 가능하다.

"...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폭력 상황을 방관만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장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폴 오커너, "Peer involvement in bullying: insights and challenges for intervention." *Journal of Adolescence*, 1999, 22:437-452

자녀가 방관자인 경우

자녀가 용기를 내어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도록 도와준다. 학교폭력 행위를 목격하는 다수의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이 관여되는 것을 꺼려한다. 그 주된 이유는 자신들의 가족이나 부모가 관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외에:

- 자신이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 피해자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까봐
- 사태의 크기가 커지고, 자신의 입장이 곤란하게 될까봐
- 다른 학생이나 교사진으로부터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을 까봐

폭력행위의 피해는 모든 사람에게 간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의 폭력행위 근절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침묵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만 만든다.

학교폭력에 대하여 자녀가 용기 있게 말을 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자녀가 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책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자녀가 가해자인 경우

자녀가 저지른 희롱과 위협행위의 학교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모든 학생들과 교육진의 안전한 학교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도 침착하게 사실을 받아드리고 학교와 협조하여 무엇이 자녀로 하여금 그런 행위를 하게 하는지 그 동기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상방법을 같이 강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억할 사항은 용납되지 않는 것은 자녀의 행위이지 자녀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조사과정이나 징계처벌 과정에 자녀가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급우를 희롱하거나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녀의 삶에 평생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부모의 후원이 있을 때 보다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종류는:

- 희롱방지
- 분노관리
- 갈등해결
- 회복적 사회정의
- 성인 멘토링
- 카운슬링
- 토요일 학교

회복적 사회정의 프로그램은 "갈등을 해결하고 청소년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역할을 한다. 본 프로그램의 취지는 청소년이 용납되지 않는 행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며, 그러한 행동의 악영향을 극소화시키는데 있다."

특별프로그램부, BC 교육부, Focus on Suspension. A Resource for School, p. 36

소속 학군과 지역학부모고문위원회(DPAC)에는 1999년 교육부에서 발간한 "Focus on Suspension. A Resource for School"이라는 안내책자가 배치되어 있다. Focus on Suspension에서는 정학처분 대신의 대안과 학교폭력 예방 및 중재전략, 그리고 교실 내외의 학생품행 개선에 대한 제안이 설명되어 있다.

- ✓ 자녀가 조사를 받고 있거나 정학과 같은 처벌의 대상일 경우, 거기에 해당되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 16세 미만의 학생에게 정학처분을 내리는 경우, 지역학군에서는 반드시 별도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지역학군이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자녀를 위한 정신감정평가나 추가보조를 받을 수 있는 외부기관으로 추천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은 자녀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자녀 자신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 모든 면접과정 동안에 동석할 수 있는 보조인을 자녀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 항소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 ("귀하의 항소권리", 9장 참조)
- ✓ 만일 학교측에서 경찰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 청소년범죄처벌법 2003년 4월에 의거하면 미성년 나이의 자녀가 경찰에게 체포되어 억류되어 있을 때에는 경찰이 반드시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 경찰이나 권한이 있는 성인(예를 들면, 학교 교장)으로부터 희롱사건으로 인하여 취조나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 자녀는 그 장소에 성인을 대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희롱행위에 대한 처벌에는 그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서 다양한 벌칙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처벌의 예를 들면 구두 및 서면 사과서 제출, 방과 후 학교에 남기, 희롱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상담, 정학 및 퇴학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에릭 M. 로허, An Educator's Guide to Violence in Schools, Canada Law Book Inc. 1997, 153장

BC 학교법령 제 73장 (3)항에 의거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처벌... "은 부모가 자식에게 행하는 마음가짐으로 사려분별이 확실하고 단호하되 육체적인 징계는 하지 않아야 된다."

귀하의 항소권리

지역학부모고문위원회(DPAC)에서 항소절차에 대한 도움을 제공받을만한 옹호인이나 후견인을 찾을 수도 있다. 이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BCCPA 옹호프로젝트의 무료장거리 전화 메시지 번호는 1-888-351-9834이다.

항소절차에 대한 관련문서는 해당 학교나 학군에서 구할 수 있다. 이외 학부모고문위원회(PACs)나 지역학부모고문위원회(DPAC)에서도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불공평한 처우를 받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언제든지 행정감찰관 사무실로 다음과 같이 불평을 신고할 수 있다: 무료 장거리 전화: 1-800-567-3247 (BC주 전역) 1-800-667-1303(TYY) 혹은 빅토리아 사무실 (250) 387-5855 또는 (250) 387-5446 (빅토리아 TTY), 웹사이트: www.ombud.gov.bc.ca
팩스: 빅토리아 (250) 387-0198, 밴쿠버 (604) 660-1691
우편주소: 931 Fort Street
Victoria, BC
V8V 3K3

항소절차는 다른 절차와는 달리 그 해당 학군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해당 학군의 최근 항소절차문과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하도록 한다.

BC 학교법령의 제 11장(항소)에 의거하면

학부모와 학생은 "학생의 교육, 건강 혹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 교육진이 내리는 결정이나 미결정에 대한 재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모든 학군은 학부모와 학생이 항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항소결과 후 교육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된다.

- ✓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항소 날짜를 잡도록 요구한다.
- ✓ 스태프가 제공하는 정보를 듣는 날 본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이 정보는 발표일 전에 미리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 항소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한다:
 - 우리측의 자료를 발표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얼마인가?
 - 누가 참석을 하는가?
 - 우리측의 후원인이 참석을 해도 좋은가?
 - 상대측에게 질문을 할 시간이 주어지는가?
 - 상대측이 우리에게 질문을 할 것인가?
- ✓ 항소 과정의 회의록 사본을 요구한다.

현지 교육위원회를 통한 항소절차가 불공평하다는 판단이 되는 경우, 귀하나 귀하의 자녀는 행정감찰관에게 불평신고를 할 수가 있다. 행정감찰관은 과거절차를 조사한 후 추천은 할 수 있으나 최종 결정을 반복할 수는 없다. 불평신고 용지는 행정감찰관 사무실이나 웹사이트: www.ombud.gov.bc.ca/complaint_form.html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10장 자가보조 안내를 이용하여 교육위원회로의 항소신청을 기록 문서화하면 불평신고 서류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준비된다.

취한 행동: 후일 참고를 위하여 자세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관련 대화 및 교신 내용을 기록한다. 필요하면 추가문서를 같이 보관한다.

기록 시 참고사항:

- 누구랑 대화를 했는가
- 언제
- 어떤 방식으로? 편지, 전화, 팩스 등등
- 누가 조사를 담당하게 되는가
- 어떤 조사를 하기로 했는가
- 어떠한 혐의를 보았는가
-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관이 본인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했는가
- 본인이 다시 연락을 할 필요가 있는가? 언제해야 하는가?
- 학교측의 자녀를 위한 보호 방식은 어떤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자녀의 신분을 비밀로 보장하겠다고 했는가
- 자녀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떤 카운슬링 서비스가 제공되는가
- 자녀가 학교에 복학을 하게 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거치게 되는가
- 미래에 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와 상담을 해야 하는가
- 경찰에 연락을 취해야 하는가
- 본인이나 가족일원이 후원을 필요로 하는가

날짜/시간: _____ 담당자: _____

접촉방식: 전화 방문 편지

용건:

결과:

날짜/시간: _____ 담당자: _____

접촉방식: 전화 방문 편지

용건:

결과:

날짜/시간: _____ 담당자: _____

접촉방식: 전화 방문 편지

용건:

결과:

날짜/시간: _____ 담당자: _____

접촉방식: 전화 방문 편지

용건:

결과:

학부모자문위원회(PAC)의 하는 역할

학교와 학군규정만 가지고는 학교폭력행위를 근절하지 못한다. 개인적으로 그룹들 사이에 서로의 다른 점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학교분위기를 만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계획, 진행, 협조, 교육, 감독, 추적 및 평가가 필요하다.

학부모자문위원회는 학교폭력 경험담을 학부모와 학생들로 직접 들어주고 이런 문제에 대하여 학교측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예측을 해줄 수 있는 모임이기도 하다. 이 모임에서는 교정 내외에서 학생들 사이에 감추어져 있는 마찰과 갈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연이 아닌 사건들을 간추려내어 여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학생들과 학교 교육진에게 추천할 수도 있다.

학부모자문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안내하면서 다음과 같은 역할도 하고 있다:

- ✓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측의 노력에 대한 평가 (13장, "귀하의 학교는 얼마나 안전한가?"란 참조)
- ✓ 안전학교 위원회 조직 추천
- ✓ 안전학교 위원회 모임에 동참
- ✓ 희롱과 위협행위의 학교폭력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춘 연사를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하여 초칭
- ✓ 학군지역의 다른 학부모자문위원회와 협동하여 학군 전역에 대한 안전학교 규칙을 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 있는 학교폭력 예방과 중재 프로그램도 장려할 수 있다.

투표를 통하여 선출되는 학부모자문위원회 모임은 학교에 관련된 제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학교 교장과 교육위원회에게 고문역할을 한다.

학교법령, 제 8장 (4)절

자녀의 학교는 얼마나 안전한가?

자녀의 학교에 대한 안전환경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책자로는 BC 교육부와 법무차관부, 현 시민안전 및 법무차관부에서 발간한 "Safe School Planning Guide and Focus on Bullying"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새로 개정된 "Safe School Planning Guide"는 2003년 가을에 발간된 예정이다. 시민안전 및 법무차관부와 BC 교육부에서 공동발간한 "Focus on Harassment and Intimidation: Responding to Bullying in Secondary School Communities"도 참조하시기 바란다.



안전한 학교생활환경을 만들고 보존하기 위하여 세컨데리 학교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현재 학교에서 잘 하고 있는 점, 앞으로 변경해야 할 점은 개선할 점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자녀의 학교에 안전학교위원회의 결성이 필요한지 여부를 가름해주고, 만일 이미 그러한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재학생, 교사, 교무진, 후원 스태프, 학부모 및 방문자들이 얼마나 학교의 생활에서 친밀감을 느끼고 있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가?
- 우리 아이의 학교 학생들의 윤리강령은 무엇인가? 성인, 스태프, 자원봉사자들의 윤리강령은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들이 지켜지고 있는가? 학생들과 성인들의 윤리강령 기준에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
- 성적취향, 성별 혹은 인종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꾸밈없는 모습으로 생활하기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인가?
 - ✓ 동성에 혐오현상이 학교 내에 존재하는가? 개별적 성적취향에 상관없이 생활할 수 있는 곳인가?
 - ✓ 성 차별주의가 학교 내에 존재하는가? 성적인 희롱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가? 얼굴 생김새로 사람을 판단하는 차별행위가 일반적으로 존재하는가?
 - ✓ 인종적 차별행위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 전반적으로 판단할 때, 학교에서 장려하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태도는 어느 정도까지 장려되고 있는가?
- 지난 한 해 동안 학교 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몇 건이나 되는가? 지난 2년 동안은? 이 중에 문서화되고 문제가 해결 된 사건은 몇인가? 이 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추적조사를 시도해 보았는가?

얼굴 생김새로 사람을 판단하는 차별행위를 "lookism"이라고 한다.



- ❑ 성인과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희롱사건은 몇 번이나 있었는가? 이 사건들은 어떤 식으로 기록되었고 문제를 해결 보았는가? 추적조사는 어떻게 실시되었는가?
- ❑ 자녀의 학교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어떤 과목에 포함되어 실시되고 있는가?
- ❑ 학교폭력행위를 방지하고 중재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 ❑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조치에 대한 토론의 기회가 학교 스태프, 학생, 학부모 및 기타 지역사회 일원들을 위하여 얼마나 자주 마련되어 있는가? 그런 기회는 과연 실제로 효과가 있는가?
- ❑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하는 학교 방침과 절차는 무엇인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안내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가?

학부모가 인지하고 있어야 될 사항: 권리 및 책임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개별적 혹은 학교 전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 즉,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있을 때 문제해결은 보다 수월하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아래 수록된 정보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청소년처벌법 2003년 4월이나 인권보호헌장 등이 적용될 수도 있다. 자녀의 상황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권한있는 책임자에게 문의하도록 한다.

학부모는:

- ✓ 자녀가 학교에서 공평하게 대우를 받도록 요구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 ✓ 자녀의 학교수업 결석여부, 행동 및 학업진도에 대한 정보를 학교로부터 통보 받을 권리가 있다.
- ✓ 교육위원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모든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 자녀의 학교와 학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정보 중에는 자녀에게 혜택이 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 ✓ 자녀의 학습프로그램에 대하여 담당교사나 교장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반대로, 자녀의 학습프로그램에 대하여 담당교사나 교장이 귀하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위원회나 소속 임원이 내리는 결정이나 미결정이 자녀의 교육, 건강 및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할 권리가 있다.
- ✓ 공립학교 제도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후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대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예를 들면, 배우자, 믿을 수 있는 친구, 혹은 해당지역 학군에서 제공할 경우 학군 학부모옹호단체(DPAC)의 임원을 대동할 수 있다.
- ✓ 학부모고문위원회(PAC)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 교육위원회의 소유재산이 고의적으로 혹은 실수로 파괴되거나 훼손, 분실, 개조시키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자녀와 같이 혹은 별도로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학부모는 자녀에 관한 교육목표와 정책 등 학생을 위한 서비스 등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절차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학부모의 가장 큰 책임은 건전하고 후원적인 자녀의 학습환경을 구축하는데 있다. 그리고 학교제도를 배양 보존하고, 자녀의 교육을 같이 책임질 의무도 갖고 있다.

BC교육부, 교육정책훈령

학생은:

- ✓ 5세에서 19세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 ✓ 16세까지의 교육은 의무교육이다.
- ✓ 학교의 규칙, 정책 및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 ✓ 학교의 규칙, 정책 및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정학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16세까지는 정학처분 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 16세 이상의 경우, 학교의 규칙, 정책 및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학업을 거부할 때 교육프로그램에서 제적을 당할 수도 있다.
- ✓ 자신의 학습프로그램에 대하여 담당교사나 교장에게 상담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 자신의 교육, 건강 혹은 안전문제에 관한 결정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 ✓ 부모와 같이 혹은 별도로 교육위원회의 소유재산을 일부러 혹은 실수로 파괴하거나 훼손, 분실, 개조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BC 학교법령, 교육부의 규칙과 법규에서 제시하는 권리와 의무사항이외에 주 정부와 연방 정부, 유엔의 어린이 권리헌장 그리고 일반사법에서 제시하는 유아 및 청소년 권리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 교장 그리고 위원회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1996년 BCCPAC, BC 교장 및 교감협회, BC교사연맹에서 발간한 "Building Partnerships in Schools"라는 제목의 핸드북을 참조한다. 자녀 학교의 PAC, 교장 혹은 학군사무실을 통하여 사본을 구하거나 BCCPAC 사무실에서 직접 구입할 수도 있다. BC학교법령과 교육부의 규칙과 법규도 소속학군을 통해서 혹은 교육부 사무실에서 구할 수가 있다 (본 안내문 17장 참조).

"학생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일관된 교육의 혜택을 누릴 기회, 자신들의 교육프로그램을 짜는데 동참할 기회, 자신들의 장래 직업에 대한 선택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다른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다른 학생들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할 책임도 있다."

BC교육부, 교육정책훈령

학생들이 갖고 있는 기타 권리들:

- ✓ 무시당하지 않고 존엄성을 인정받고 대우받을 권리
- ✓ 학대와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날 권리
- ✓ 자신들의 권리와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
- ✓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이 숙고될 권리
- ✓ 자신에게 영향이 있는 결정에 대하여 알 권리

안전하고 정연한 학습환경과 학생들의 올바른 태도를 교육하는데 일반규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법령(제 76장(2)절)에서는 각 학교마다 "최고의 도덕"을 학생들에게 고취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책임을 완수하는데 가장 효력있는 방법의 하나가 학교생활규칙 설립 및 적용이다.

Keeping Schools Safe: 안전학교유지, 교장과 교감을 위한 안내서, 89장

추천도서 및 비디오 목록

- BCCPAC. Speaking Up! A parent guide to advocating for students in public schools (공립학교제도에 있어서 학생들을 옹호하는 학부모를 위한 안내서). 1999
- BCCPAC과 Open School. Speaking Up! Parents Advocating for Students in Public Schools (공립학교제도 내에서 학생들을 옹호하는 학부모를 위한 안내 비디오). 1999
- BCCPAC, BC교장 및 교감연맹, BC교사연맹. Building Partnerships in Schools: A Handbook. 1996
- BC원주민사업부. A Guide to Aboriginal Organizations and Services in British Columbia BC주 원주민 단체 및 서비스 안내). 2000
- BC교육부. Focus on suspension. A Resource for Schools (정학처벌). 1999
- BC교육부. Helping our kids live violence free: A parent's guide (폭력 없는 삶을 살도록 자녀돕기: 학부모를 위한 안내서(8-12학년 용)). 2000
- BC교육부. Performance Standards - Social Responsibility (평가기준 - 사회적 책임). 온라인 다운로드 가능: www.bced.gov.bc.ca/classroom_assessment/perf_stands/social_resp.htm
- BC교육부와 BC시민안전 및 법무차관부. Focus on Harassment and Intimidation: Responding to Bullying in Secondary School Communities (초점, 희롱과 위협행위: 세컨데리 스쿨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의 대응책). 2001
- 교육에서 발간하는 참고문헌 온라인 리스트: www.bced.gov.bc.ca/publications.htm. Special Education Services: A Manual of Polic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Parent's Guide to Individual Education Planning (IEP), Manual of School Law, K-12 Policy Manual for BC Schools (특수교육서비스: 방침안내서, 절차 및 안내, 학부모를 위한 개별적교육설계(IEP) 안내, 학교법령 안내서, BC주 K-12학년 정책안내서 등등).
- BC시민안전 및 법무차관부. 지역사회프로그램 담당부. Taking A Stand (의지 굳히기). 제 2판. 1998
- BC시민안전 및 법무차관부와 교육부. Safe School Planning Guide (안전한 학교설립 안내). 1999 (2003년 가을 개정판 발간예정)
- BC교장 및 교감협회와 BC교육이사연맹. Keeping Schools Safe: A practical guide for principals and vice-principals (안전학교 유지: 교장 및 교감을 위한 안내서, BC주의 안전한 학교만들기 운동의 일부분). 1999년 6월
- 클락, 주디스 A., 이콜스, 알렌 C. A Guide to Schools Legislation in British Columbia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교육법령에 대한 안내서). 제 2판. Eduserv. In. 1999
- BC행정감찰관. Fair Schools Public Report No. 35. 1995년 5월
- 록솔리드 파운데이션과 빅토리아대학교 청소년 및 사회조사단. Rock Solid Children, Youth, and Adults: Creating a Responsive Environment for the Prevention of Youth Violence (튼튼한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건강사회환경 구축). 비디오. 1999.
- 로허, 에릭 M. An Educator's Guide to Violence in Schools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자를 위한 안내서). Canada Law Book Inc. 1997.
- 세돈, 신디, 맥리란, 엘리슨과 라호이, 기즐. How Parents Can take Action Against Bullying (학교 내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학부모의 대응방법). Bully B'Ware Productions. Hemlock Press. 2000
- US교육부, 민권보호사무실 및 검찰총장총연맹. Bias Crimes Task Force. Protecting Students from Harassment and Hate Crime. A Guide for Schools (폭력 및 증오범죄로부터 학생보호하기. 학교를 위한 안내서). 1999년 1월

기타 참고자원

The Affiliation of Multicultural Societies and Service Agencies (AMSSA): 비정치, 비영리. 전 BC지역에 있는 85개의 복합문화단체, 이민자들을 위한 서비스단체와 관련 단체들의 모임이다. 전화: (604) 718-2777 팩스: (604) 298-0747, 이메일: amssa@amssa.org. 웹사이트: www.amssa.org

BC인권위원회: 차별대우에 대한 불평신고에 조사 및 중개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권헌장 내용의 실현을 장려하고 있는 단체.

빅토리아 시: (250) 387-3710, 팩스: (250) 387-3643

밴쿠버 시: (604) 660-6811, 팩스: (604) 660-0195

기타 BC지역, 무료장거리전화: 1-800-663-0876

청각장애인용 전화 (TDD): 밴쿠버: (604) 660-2252, 빅토리아: (250) 953-4911

BC 아동 및 가정개발부: BC주 전 지역에 연락 사무실이 있으며, 업무는 오전 8:30부터 오후 4:30까지, 월-금요일 근무하고 있다. 근처의 사무실을 찾으려면 전화번호부 블루페이지를 참조한다. 이 부서에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가정에게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육체적 혹은 성적학대, 혹은 성적착취 행위로 의심이 가는 것이 있으면 전화다이얼 "O"를 누른 뒤 교환에게 BC Children's 헬프라인을 바꾸어 달라고 부탁하거나 1-800-663-9122 혹은 TTY 1-800-667-4770로 직접 신고를 한다. 이 부서의 웹사이트 주소는: <http://www.mcf.gov.bc.ca> 이다.

BC 지역사회, 원주민 및 여성 서비스부: 복합문화, 인종차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BC주 신 이주자를 위한 가이드"를 6개 국어로 발간하고 있다. 이외 민족 및 복합문화별 BC 이민자 서비스 단체의 연락처를 담은 전화번호부와 "인종차별에 대응하는 학교: 학부모를 위한 가이드"도 발간하고 있다. 전화: (604) 660-2203, 팩스: (604) 660-1150.

응급사태에 당면한 BC가족들을 위한 모임: BC주 전역에 걸쳐 "학부모 후원 서클"을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이 모임에서는 대화향상, 문제해결, 양육법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가지고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고 배운다. 전화: (604) 669-1616, 팩스: (604) 669-1636, 무료장거리전화: 1-800-665-6880.

BC 안전한 학교와 지역사회 센터: 안전한 학교와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방해되는 괴롭힘과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방지한 성공담, 정보안내, 자원안내, 교육 및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센터의 서비스 대상은 BC 전역의 청소년, 학부모, 교육자, 경찰, 청소년단체 및 지역사회 등이다. 근무시간은 오전 8:30부터 오후 4:30까지. 월-금. 문의 무료장거리전화: 1-888-224-SAFE (7233). 웹사이트: www.safeschools.gov.bc.ca

보이즈 앤 걸즈 클럽: "학부모 모두 함께"라는 프로그램을 마찰이 예상되는 청소년나이의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있는 보이즈 앤 걸즈클럽이 후원을 하고 있다.

BC안내: 주 정부의 각종 부서에 대한 안내전화.

빅토리아: (250) 387-6121

밴쿠버: (604) 660-2421

BC 기타지역 무료장거리전화: 1-800-663-7867

청각장애인용 전화 (TDD):

밴쿠버: (604) 775-0303; 기타지역: 1-800-661-8773

안내전화 근무시간: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정후원회(FAST): 이 협회에서는 다세대별 셀프헬프식 후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 배우자 및 연장자들을 복합문화와 다세대식의 가족의 일원으로 참가를 유도하여 폭력, 학대, 스트레스, 고독장애에 대한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고, 사건이 진행 중일 경우 되도록 일찍 중개를 시도하여 지역사회와 가족들의 관계를 보다 견고히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BC전역에 걸쳐 서비스하고 있으며, 전화: (604) 299-0005, 팩스: (604) 299-5921이다.

케어네트워크에 소속된 BC청소년 연맹: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 케어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수취인부담 장거리전화: (604) 689-3204

자유정보와 사생활보호 (FOIPOP): 추가 안내정보는 현지 학군사무실로 전화하여 FOIPOP 담당인을 부탁하거나 혹은:

Ministry of Education Information and Privacy Office
PO Box 9144 Stn Prov Govt
Victoria, BC
V8W 9H1

전화: (250) 356-7508, 팩스: (250) 387-6315, 혹은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PO Box 9038 Stn Prov Govt

Victoria, BC
V8W 9A4

빅토리아: (250) 387-5629, 팩스: (250) 387-1696
밴쿠버: (604) 660-2421
BC 기타지역 무료장거리전화: 1-800-663-7867

BC이민자서비스회: 영어이외 언어를 사용하는 BC 거주인, 이민자 혹은 난민들에게 BC정착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안내정보와 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화: (604) 684-2561, 팩스: (604) 684-2266

BC장애인협회 (LDABC): 현지 LDABC 모임에 대한 안내정보와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4, 3402 27th Avenue
Vernon, BC
V1T 1F1

전화/팩스: (250) 542-5033, 이메일: lda-vernonbc@home.com

동성애자 부모와 친구들의 모임 (PFLAG): 동성애, 양성 및 양성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모임. 교육을 포함하여 동성애에 대한 안내정보와 동성애자들의 평등권리 옹호를 위한 모임이다.

밴쿠버: (604) 421-8084 혹은 (604) 468-1749
빅토리아: (604) 642-5171, 이메일: PFLAG@gayvictoria.com

피플스 로스쿨: 비영리, 비정당, 독립적 단체로서 BC주민, 특히 장애를 가진 주민을 위하여 공정한 서비스를 영어 혹은 기타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전화: (604) 331-5400,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시간 이후에는 전화메시지를 남기면 된다. 팩스: (604) 331-5401, 이메일: staff@publiclegaled.bc.ca 웹사이트: <http://www.publiclegaled.bc.ca/>

주 동성애자 연락전화: 관련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안내전화. 통화가능시간: 월-토 오후 1-4시, 월, 수 및 금요일 오후 7-10시. 이외 시간에는 메시지 서비스가 나온다. "PRIDELINE BC" 무료장거리 전화: 1-800-566-1170

청소년 반폭력 전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비밀을 보장받으면서 정보전달, 범죄예방 혹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안내전화. 연락처(BC내): 1-800-680-4264.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안전한 이메일 연락도 가능하다: <http://www.takingastand.com>

BC학부모고문위원회연맹 (BCCPAC)

BCCPAC은 학부모들의 의견이 주 정부 수준에 수렴되고 PAC과 DPAC들이 소속지역 학교와 학군에 고문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British Columbia Confederation of Parent Advisory Councils
Suite 202, 1545 West 8th Avenue
Vancouver, BC
V6J 1T5
전화: (604) 687-4433
팩스: (604) 687-4488
이메일: bccpac@telus.net
웹사이트: www.bccpac.bc.ca

BCCPAC에서는 학부모들에게 개별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무료장거리 전화: 1-888-351-9834.

도와주신 분들

고문위원회: 브랜다 터너 (회장 겸 BCCPAC 2회 부회장), 다이애나 머포드 (BCCPAC 이사), 페브 호스커 (BCCPAC 이사), 린다 맥아담스, 제 61학군 (광 빅토리아 시)

포커스 그룹 진행: 일레인 데커

포커스 그룹 참가자: 빈센트 애선슨, 제 39학군 (밴쿠버), 에리카 보크, 제 82학군 (코스트 마운틴), 쉐럴 하나보어, 제 83학군 (노스 오키나간-수취업), 주디 맥퍼슨, 제 8학군 (쿠트니 레이크), 케린 페리, 제 74학군 (골드트레일), 케롤 피터스, 제 73학군 (캠룹스 톰슨), 파리나 에인프리치트, 제 38학군 (리치몬드), 머털 자브랙, 제 44학군 (노스 밴쿠버).

글: 헬렌 파커

그래픽: 신시아 모팩트

Achieve BC 홈페이지:

<http://www.achievebc.ca/>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gov.bc.ca/bvprd/bc/channel.do?action=ministry&channelID=-8382&navId=NAV_ID_province